

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~제3조)
- 위원의 임기, 제척·회피·기피 및 해촉 등(안 제4조~제6조)
- 위원장의 직무, 회의 운영 및 간사(안 제7조~제9조)
-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 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,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·공정하게 조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에는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,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서 대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관하여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36조제1항에는 ‘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분쟁의 조정, 조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
- 또한, 법 제36조제5항에는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어,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「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」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

제36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)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1조**는 상위 법률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
- **안 제2조**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경제정책심의위원회(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)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음

- **안 제3조**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도의 도·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규정함
- **안 제4조**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법 제36조제5항에 맞춰 2년으로 정하고, 사임 등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
- **안 제5조와 제6조**는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의 주요업무인 법 제36조 제1항 각 호²⁾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위원의 이해충돌의 방지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
- **안 제7조와 제8조**는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과 위원회의 소집·개의·의결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음
- **안 제9조**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유통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하였음
- **안 제10조**는 조정의 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정신청은 시·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음
- **안 제11조**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2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제1항의 각 호

1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
2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
3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4.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에 따라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 분쟁조정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 -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
 -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심의는 2000년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 기능을 담아 운영했으나,
 - 법제처의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”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 -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유통분쟁을 전담하는 기구로써 해당 분쟁조정에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개정 취지 및 내용, 형식의 적절성, 상위법 저촉 여부 등 **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**
- 다만, 기존 ‘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’에서 유통분쟁에 관한 조정 실적이 없는 점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이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참고하여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

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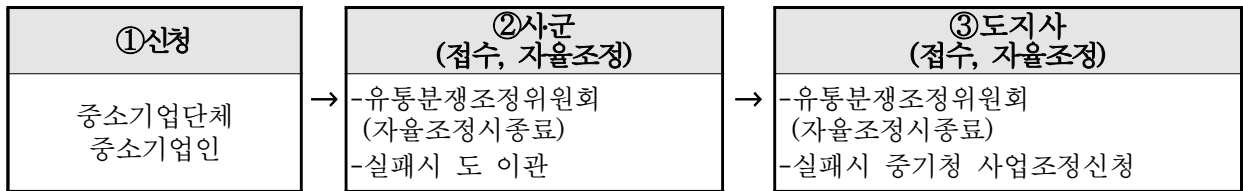
- 폐지일자 : 2019. 6. 7.
- 폐지사유 :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(폐지)함으로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방지
- 폐지 후 조치 : 분쟁 발생 시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

- 또한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“사업조정 신청” 과 달리 유통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조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상위법 개정 건의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유통분쟁조정과 사업조정 비교

■ 유통분쟁조정 ▶ 대규모점포대상 (법적구속력 없는 자율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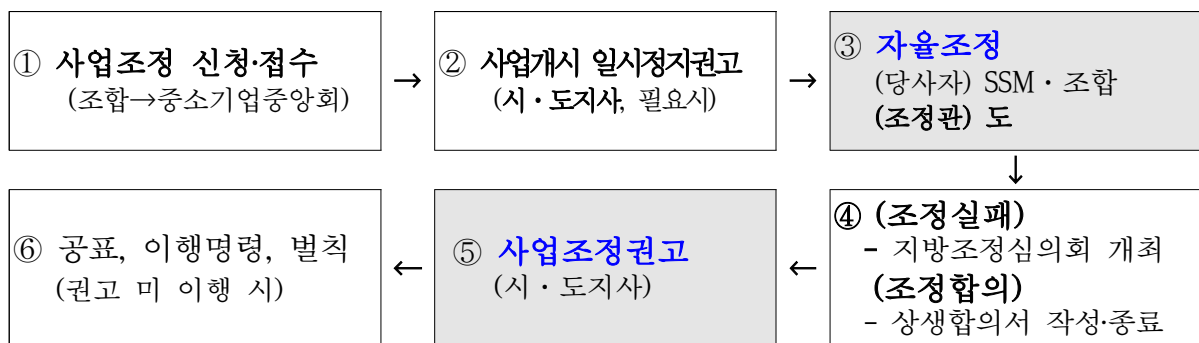
1. 근 거 :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
2. 목 적 : 대규모점포대상 생활불편조정(교통,환경 등) 및 중기청 사업조정 전 자율조정
3. 담당/조정기관 : 시·군 및 도 / 유통분쟁조정위원회
4. 절 차 : ①~③단계의 자율조정단계



5. 운영사례 : 없음

■ 사업조정 ▶ 대규모점포 ⇒ 중소기업청, SSM ⇒ 시·도 (법적구속력 있음)

1. 근 거 :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(제31,32,33,34조)
2. 목 적 :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당해 업종 중소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경우,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사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권고
3. 담당/조정 기관 : 대규모점포 ⇒ 중소기업청, SSM ⇒ 시·도지사 / 사업조정심의회
4. 절 차 : SSM (※ 대규모점포는 중기청에서 사업조정심의회개최 → 사도경유없이 기업에 직접권고)



※ 이행명령 불이행 시 : 법 제41조(벌칙)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
 법 제43조(과태료)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(도지사 위임)

5. (SSM)운영사례 : '18년 조정권고 1건 (노브랜드 청주북대점) ※ 이후 없음